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(긴급)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6판)」 배포 및 안내

1. 관련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15629호(2022.4.29.)
- 다. 중앙방역대책본부-27907호,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(2022.9.23.)

- 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「**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6판)**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,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가. 주요 개정사항

- (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)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('22.5.2) 이후, 남아 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, 권고사항*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

*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,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,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

※ 단,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,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바람

나. 시행: 2022. 9. 26.(월) 0시부터 시행

- 3. 아울러, 위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, 시도교육청에서는 변경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6판). 끝.

교 육 부 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시도교육청, 소속기관, 소속단체

주무관

손승의

학생건강정책
과장

전결 2022.9.23.
정희권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7735 ((2022.9.23.)) 접수

우 2815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/ www.moe.go.kr

전화 0442036960 전송 0442036438 / inzero85@korea.co.kr / 비공개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대응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6판)」 정정 안내

1. 중앙방역대책본부-27907, 학생건강정책과-7735(2022.9.23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위 관련문서에 따라 안내된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6판)」의 오기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다시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.

- 아 래 -

페이지	변경 전	변경 후
24	<Q25. 답변내용 중> ○ 단, 실외에서 운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며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	<해당 내용 삭제>

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6판). 끝.

교육부장관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시도교육청, 소속기관, 소속단체

주무관 손승의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
 전결 2022.9.26.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7765 ((2022.9.26.)) 접수 ()
 우 2815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/ www.moe.go.kr
 전화 0442036960 전송 0442036438 / inzero85@korea.co.kr / 비공개